

【 2016.2.03(수) 강원일보 】

경기장 건설 진행상황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올림픽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는 설상경기장 7개와 빙상경기장 5개 등 총 12개의 경기장이 필요하다.

도는 이 가운데 정선 중봉 알파인과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강릉 아이스아레나·스피드스케이팅·아이스 하키(강릉·관동 각 1개씩) 등 6개 경기장을 새로 짓는다. 신설 경기장은 지난 달 말 기준 평균 공정률이 53%를 넘어 섰다. 보광 스노경기장과 용평 알파인 경기장, 강릉 컬링센터 등 3개는 시설을 보완해 활용할 계획이다.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 크로스컨트리센터, 바이애슬론센터 등 3곳은 기존 시설을 활용키로 했다. 도는 이들 경기장 시설의 건설 못지 않게 사후 활용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 **빙상경기장=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현재 27%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연면적 3만7,485㎡ 규모다. 총 8,000명이 관람할 수 있으며 400m의 더블트랙이 들어선다. 2017년 3월 완공 예정이다. 강릉 아이스아레나는 55%의 공정률로 내년 상반기 완공한다. 연면적 3만7,485㎡ 규모, 관중석 1만2,000석 규모다. 총 사업비 1,305억원



◇ 64%의 공정률을 보이는 슬라이딩센터.

빙상경기장

스피드스케이팅·아이스아레나
내년 상반기 완공 목표 잭걸음
컬링센터 보완공사 10월 완료

설상경기장

정선 알파인 경기장 공정률 62%
철야작업으로 성공적 대회 준비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64% 진행

이 투입된다. 강릉 아이스하키센터(공정률 57%)는 연면적 2만4,342㎡ 규모로 1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

관동 아이스하키센터(공정률 61%)는 연면적 1만9,666㎡ 규모로 6,000명이 동시에 관람할 수 있다. 아이스하키 센터 2개 경기장은 올해 연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보완 공사가 진행 중인 컬링센터는 오는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연면적 1만7,213㎡ 규모에 3,5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빙상경기장은 모두 강릉 올림픽파크에 자리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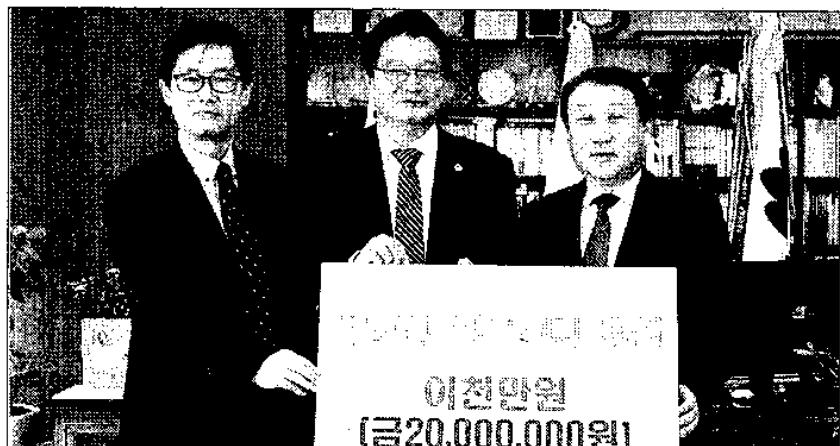
■ **설상경기장=오는 6일 첫 테스트** 이벤트가 열리는 정선 알파인경기장은 공정률 62%를 보이며 성공적인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늦어진 공기로 인해 일부 언론에서 대회 개최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을 받기도 했지만 휴일을 잊은 철야작업 등 ‘시간과의 전쟁’ 끝에 불안감을 말끔히 씻어냈다.

국제스키연맹(FIS) 측은 지난달 알파인경기장을 찾아 슬로프와 눈 상태 등 경기장 시설을 점검한 뒤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장’이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봅슬레이와 루지, 스켈레톤 경기가 열리는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는 64%의 공정률로 내년 2월 테스트이벤트 준비가 한창이다. 보광 스노경기장은 오는 18일 테스트이벤트 준비를 위한 보완 공사가 진행 중이다. 관람객 2만8,000명 수용이 가능하다. 용평 알파인경기장과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 크로스컨트리센터, 바이애슬론센터는 모두 기존 시설을 활용한다. 최문순 지사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강원도가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현기자



SG건설 소외계층 후원금 기탁 향토기업인 SG건설 조창진 회장(사진 오른쪽)이 2일 원주시청 시장실을 방문해 원창목시장(사진 가운데), 조원학 시 시민복지국장에게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 해소 후원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 2016.2.03(수) 강원도민일보 】



SG건설 소외계층 후원금 2000만원 전달 원주 봉화산
벨라시티 아파트 시공사인 SG건설(대표 조창진)은 2일 오전
원주시청을 찾아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금 2000
만원을 전달했다.

도내 교통인프라 대폭 개선

동해·제2영동고속도로 12월 개통 교통망 확충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도내 교통인프라가 대폭 개선된다.
2일 국토교통부와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 총사업비 6345억원이 투입
되는 동해고속도로 주문진~속초
(18.9km) 구간과 5855억원이 소요되
는 동해고속도로 동해~삼척(18.6km)
구간이 12월 개통된다.

올해 주문진~속초 구간에는 699
억원, 동해~삼척 구간은 494억원이
투입된다.

해당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속초~
주문진~강릉~동해~삼척이 연결, 영
동지역의 교통망이 대폭 개선된다.

총 사업비가 1조600억원인 제2영
동고속도로 경기 광주~원주(57km)
구간도 연말 개통된다.

2011년 착공된 광주~원주 고속도

로는 민자고속도로며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제이영동고속
도로'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
O)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부 국도도 개통을 앞두고 있다.
국도 7호선 고성 간성~현내(15.0
km), 38호선 태백~도계(11.0km), 도
계~신기(7.9km), 신기~미로(6.5
km) 구간도 올해 개통된다.

국지도 70호선 춘천 신매~오월
(7.4km) 구간도 개통되는 등 해당
지역 교통인프라가 개선된다.

올해 신규 도로사업도 착공된다.
국도 31호선 방림~장평, 59호선
남면~정선, 국지도 49호선 포진~문
막, 15호선 도계~장성 구간이 올해
착공된다.

내년에는 동서고속도로 동홍천~
양양(71.7km) 구간이 완공되고 철
도는 원주~강릉(120.2km) 복선전
철이 개통된다.

안은복 rio@kado.net

300억 이상 公共공사, 종심제 본격 시행

올 30여건·2조원 집행

수행능력·입찰금액 각각 50점 창원 국도대체로 '1호' 될 듯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할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가 지난 2년여의 준비를 마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로써 공공조달 시장에서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입찰금액(가격)뿐 아니라 수행능력과 사회적책임 등 종합심사를 거쳐 낙찰자가 결정된다.

▶관련기사 3면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를 바탕으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와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종심제 심사 세부기준을 제정, 이달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종심제 적용 대상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공사로, 조달청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약 30여건, 총 2조원 규모의 종심제 대상 공사를 집행하게 된다.

심사 세부기준을 보면, 심사 항목과 배점 기준은 공사수행능력 50점, 입찰금액 50점, 사회적책임 1점(가점), 계약신뢰도(감점) 등으로 확정됐다.

수행능력 배점(고난이도)은 시공실적 15점(또는 시공 인력 15점), 동일공종 전

문성 비중 5점(7점), 배치기술자 10점(11점), 시공 평가점수 15점(15점), 규모별 시공역량 3점, 공동수급체 구성 2점(2점) 등으로 구성된다.

입찰금액의 경우에는 일반공사 단가 -4점, 하도급계획 -2점을 비롯해 고난이도 공사 하도급계획 -2점, 물량심사 -2~1점, 시공계획 -2점 등 감점 방식으로 심사한다.

또 사회적책임(공통)은 인력고용 및 안전, 공정거래 각각 0.2점과 지역경제기여도 0.4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달 설명회를 통해 제시했던 안과 동일하다. (1월13일자 본보 A9면 참조)

하지만 항목별 만점 기준 및 차등 접수 등 세부 사항과 심사 방법은 일부 수정됐다. 시공 평가 및 시공인력 등 업계의 의견 수렴 및 검토 과정을 거쳐 우려를 낳았던 제약 요건들을 상당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새 기준이 적용될 제1호 종심제 대상 공사는 창원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제2안민터널) 건설공사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의 아 공사는 추정가격 1300억원 규모의 고난도 공사로,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 첫 종심제 낙찰자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봉승권기자 skbong@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종심제를 롤모델로…

公共시장서 시범사업 후 제도화 추진

정부의 새로운 입찰제도 실험 중 하니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가 종합심사나찰제 모델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선불리 도입하기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 연착륙 가능성을 따져보고 국내 공공건설시장에 최적화된 제도로 설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공공사 1~2건을 대상으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공공공사에 시공책임형 건

설사업관리를 적용해 발주하기 위해선 국가계약법 개정이 필요하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근거 규정이 있지만 국가계약법상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의 공공공사 발주를 위해 국가계약법을 개정할 경우 현실적으로 올해 사업이 가시화될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게다가 이제 첫 걸음을 내딛는 단계인 만큼 시행착오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다. 박경남기자 knp@▶3면에 계속

본격 시행 '종심제' 세부심사기준은

제15091호 2016년 2월 3일 수요일 건설경제 A3

시공평가 7개→3개 등급으로… 인력도 20인으로 완화

(고난이도 적용 시공인력)

조달청이 제정한 종심제 세부심사기준을 보면, 전체적인 항목별 배점은 종전안과 동일하지만 세부적인 심사방식 및 만점기준 등은 상당폭 달라졌다.

기별 업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입찰참가 또는 수주에 제약요소가 될 수 있다는 업계의 공통 지적사항은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가장 큰 결집돌로 꼽혔던 시공평가

결과 심사기준이 한시적으로나마 완화됐다. 앞서 95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두 7개(A~G) 등급으로 차등했던 점수산정방식이 A~C등급까지 3단계로 줄었다.

95점 이상 만점기준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등급 간 점수차를 3점 단위에서 5점 단위로 변경해 차등폭을 줄였다.

또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도 최하등급(G) 14.4점이 아닌 중간등급(B) 14.9점

95점 만점기준 그대로 유지 등급조정은 올까지 한시적 점수차는 3점→5점 단위로

인력 만점도 25점으로 낮춰

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달청은 이 같은 3개 등급 심사 방식은 시공평가점수가 충분히 축적되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내년부터 다시 7개 등급별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90점 이상이면 만점을 부여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렇게 되면 이미 전체의 60% 이상 업체가 만점을 받게 돼 면밀히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며 “대신 등급별 점수차를 줄이고 시공평가가 없는 업체도 입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고난이도 공사에 적용되는 시공인력 심사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앞서 심사대상인원을 최대 30인으로 했으나, 업계의 신규고용 및 기술인력 유지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20인으로 줄였다.

또한 기술자등급 및 참여경력,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는 만점 등급기준도 45점 이상에서 25점 이상으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여기에 등급 간 격차도 종전 5점에서 2.5점으로 낮췄다.

고난이도 공사의 물량심사와 시공계획심사방식도 달려졌다.

물량심사의 경우 물량내역 수정허용 세

부공종 선정을 위한 평가대상을 종전 설계내에서 직접공사비의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췄다.

업체들의 적극적인 물량수정 입찰을 활성화하되 그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공계획심사에서는 감점위주의 구조를 개선했다.

종전안대로라면, 심사점수가 따라 최대 -2점의 감점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심사점수 80점 이상이면 감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고정비용 비중에 따른 단가점수 만점범위도 종전 5개 단계에서 고정비용 20% 미만일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8% 이내 기준을 삭제, 4단계(20% 이상, 각 5% 간격)로 변경했다.

그러나 균형가격 초과 투찰 시, 이하 투찰 대비 2배의 감점을 부여하는 입찰금액 심사방식은 종전안을 유지했다.

심사점수 산출을 위한 예정가격이 하향조정되거나 균형가격 산정방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예규에 따른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의 낙찰률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조달청의 설명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1면서 계속=시공책임형 건설사업 관리, 종심제를 둘 모델로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종합심사나찰제 모델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일단 기재부는 CM at Risk 시범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러가지 입찰제도를 통해 건설시장을 활성화하고 국가 입장에서도 효율성을 높이는 기대효과가 있다면 입찰제도에 대해 새로운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기재부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CM at Risk의 경우 종합심사나찰제처럼 국가계약법을 개정하기 전에

공공기관 특례 운용기준 제정 등을 통해 시범사업의 추진 가능성은 열어뒀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전면 시행한 종합심사나찰제도 국가계약법을 개정하지 않고 공공기관 특례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면서 “종합심사나찰제처럼 CM at Risk도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도 “CM at Risk는 다양한 입찰제도 중 선택지를 하나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기재부와 협의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장단점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건협 5차 이사회… 2016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 의결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사진 가운데)는 2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제5차 이사회를 열고 201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이를 총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건협은 이달 23일 같은 장소에서 제58회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

정이다.

최삼규 회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협회는 올해 표준시장단가 제도와 종합심사나찰제 등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고,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발주기관의 적폐행위 근절 강화 등 업계 고충사항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활성화 3대 조건은

- ① 계속비공사 적용 예산확보
- ② 시범사업 통해 문제점 개선
- ③ 발주기관 인식 전환도 중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가 올해 공공건설 시장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CM at Risk의 활성화를 위해선 해결해야 할 전제조건들이 적지 않다.

우선 다른 입찰제도와 마찬가지로 CM at Risk도 결국 적정 수준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CM at Risk는 건설사업 관리자가 시공 이전 단계에서 설계, 공법, 일정, 공사비 추정 등 일반적인 CM 업무는 물론 시공까지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으로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고 공기 지연을 차단하기 위해 다른 입찰제도보다 예산이 추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가 프로젝트 투명성 확보와 원가 절감, 공기 단축 등 CM at Risk의 장점이 많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선 전면 도입하기가 여의치 않다고 말하는 이유다.

이에 따라 CM at Risk의 전면 시행을 위해선 발주기관이 설정하는 총액공사비 상한이 적정 수준에 맞춰져야 한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또 CM at Risk가 주로 공기가 긴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점은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계속비공사가 아닌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할 경우 CM at Risk의 연착륙을 보장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계속비공사는 발주기관이 예산을 정부로부터 미리 확보한 뒤 일정 기간 동안 공

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총사업비 확보에 따라 예산에 대한 걱정 없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반면 장기계속공사는 총사업비는 책정돼 있지만 차수별 계약으로 인해 매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만에 하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공사의 진척이 더디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CM at Risk를 적용할 경우 계속비공사로 발주해 적정 수준의 예산이 안정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해 CM at Risk 시범사업의 결과도 CM at Risk 안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쳤던 종합심사낙찰제도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중간중간 땀질 식 쳐방이 끊이지 않았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잡음이 지속됐지만 시범사업을 거치지 않았다면 전면 시행 과정에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CM at Risk도 국가계약법 개정에 앞서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 CM at Risk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나오고 있다.

발주기관들의 인식 전환도 CM at Risk 가 풀어야 할 숙제다. CM at Risk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들은 공공건설 시장에서 입

지가 축소될 여지가 있는 만큼 CM at Risk 도입에 적극 나서지 않을 가능성 크다.

발주기관들이 CM at Risk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도 정부의 뜻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에서 CM at Risk가 보편화됐다는 것은 제도의 효율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CM at Risk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선 입찰공고에 계속비공사로 명시하는 등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 2016.2.03(수) 건설경제 】

아하! 그렇구나

공사완성 지연을 이유로 한 계약보증금 귀속 여부

사건
개요

건설업자는 00공사에 대해 발주기관과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기관으로부터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한 후 착공했다. 그런데 건설업자는 자신의 사정으로 공사를 중도에 포기했고, 연대보증인이 준공 기한을 경과해 공사를 완성하자 발주기관은 건설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보증기관에 계약보증금을 귀속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보증기관은 연대보증인이 당해 공사를 완성한 이상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자, 발주기관이 보증기관을 상대로 계약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쟁점

국가계약법규에 의하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당초 약정한 준공 기한을 경과해 공사를 완성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그 외에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기관에 계약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사안
검토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8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수급인)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보증금이 국고(도급인)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지체와 관련해서는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에서 수급인이 준공시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해 산출한 금액을 도급인에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와 별도로 도급인이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보증금 전액 또는 그 가운데 약정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는 규정은 없고, 그러한 취지의 약정도 이루어진 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

이 종국적으로 공사완성 의무를 이행했다면 비록 그 의무의 이행이 당초의 약정 기일을 넘김으로써 수급인에게 지체책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가 도급인에 대해 지체상금률에 따라 산정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도급인이 공사지체를 이유로 곧바로 계약보증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제3호는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물론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될 수 있다), 이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후 연대보증인이 약정된 준공기한을 넘겨 공사를 완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당초의 준공 기한을 경과하기는 했지만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발주기관은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다13992 판결).

현재 국가계약법규에 의하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을 귀속할 수 있고, 준공 기한을 경과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준공 기한을 경과하여 공사를 완성한 경우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대법원은 준공 기한을 경과한 경우 지체상금만 부과할 수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 계약보증금을 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설업자로서는 준공 기한을 경과하여 공사를 완성한 경우 발주기관이 지체상금 외에 계약보증금까지 귀속하는 것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송 등을 통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다.

김성근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